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. 7. 4 선고 2017가단76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론 종결 2018. 6. 20

판결 선고 2018. 7. 4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D 대 221㎡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18㎡ 지상 기와지붕 주택 및 같은 도면 표시 ㄲ, ㄻ, ㄼ, ㄽ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37㎡ 지상 슬레이트 지붕흙벽창고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각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2014. 5. 8. 강원 영월군 D 대 221㎡(이하 'D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2014. 4. 3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는 D 토지 중 청구취지 제1항 기재 (가)부분 18㎡ 지상 기와지붕 주택(이하 '이 사건 주택'이라 한다) 및 (나)부분 37㎡ 지상 슬레이트 지붕 흙벽창고(이하 '이 사건 창고'라 한다)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1호증의 1, 2,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,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창고를 각 철거하고, 그 부지인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창고는 1952년 이전에 D 토지의 전 소유자의 묵인하에 지어진 건물로, 60년 이상 무상으로 그 부지인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, 피고에게 법정지상권 등 위 주택 및 창고의 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달리 피고에게 민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.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,

판사 주은영

별지